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분야 혁신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에 기업성장지원팀을 신설하고, 창의적인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건축문화경관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하며,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개발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정책과장의 직급을 상향하고, 일부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정보화통계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을 “정보화통계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 및 기업성장지원팀장”으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기업성장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기업성장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토교통 부문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력·기술·인프라 교류협력 등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과학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부문 우수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부문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국토교통 혁신펀드 운영에 관한 사항
6. 산하기관의 국토교통과학기술 활용촉진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육성 관련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제59조제2항 중 “모빌리티정책과장”을 “건축문화경관과장, 모빌리티정책과장”으로,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및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5”를 “26”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0”을 “59”로 한다.

별표 7의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5”를 “26”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1”을 “60”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제47조제1항 관련)

소속	명칭	위치	관할구역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 경찰대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역 구내	경부고속선(시흥연결선~서울기점 59.795km 지점), 경부선 중 서울역~평택역(서울기점 78.35km 지점), 중앙선 중 청량리역~양평역 서쪽, 경인선, 용산선, 경춘선, 경원선, 경의선, 교외선, 망우선, 안산선, 남부화물기지선,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인천국제공항선, 신분당선, 수인선, 문산기지선, 병점기지선, 용문기지선, 평내기지선, 경강선 중 성남역~여주역, 수서평택고속선, 서해선
	부산지방철도 특별사법 경찰대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역 구내	경부고속선(김천구미역~부산역), 경부선(영동역 남쪽~부산역), 중앙선 우보역 남쪽, 경전선 진주역 동쪽, 진해선, 대구선, 우암선, 부전선, 장생포선, 울산항선, 괴동선, 온산선, 가야선, 양산화물선, 건천연결선, 동해선, 덕산선, 부산신항선, 신항북선, 신항남선, 경북선 중 김천역~어등역, 문경선, 신동화물선
	광주지방철도 특별사법 경찰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송정역 구내	호남고속선 중 오송기점 67.5km 지점 남쪽, 호남선 중 강경역 남쪽, 경전선 중 광주송정역~진주역, 장항선 중 장항역 남쪽(천안기점 131km 지점), 북송정분기~북송정역, 전라선, 군산화물선, 옥구선, 광주선, 여천선, 북전주선, 광양제철선,

		대불선, 장성화물선, 광양항선, 신 광양항선, 진경삼각선
제천지방철도 특별사법 경찰대	충청북도 제 천시 제천역 구내	중앙선 중 양평역~우보역, 충북선 중 주덕역 동쪽(조치원기점 75.0k m 지점), 경북선 어등역 동쪽, 정 선선, 삼척선, 영동선, 태백선, 묵호 항선, 북평선, 함백선, 경강선 중 원주역~강릉역

[별표 6]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48조제1항 관련)

구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명칭	위치
철도특별 사법경찰 대	대전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역 구내
	천안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역 구내
	오송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역 구내
	서대전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서대전역 구내
서울지방 철도특별 사법경찰 대	서울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역 구내
	수서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역 구내
	청량리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역 구내
	영등포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역 구내
	용산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역 구내
	수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구내
	광명센터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 구내
	부평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역 구내
	남춘천센터	강원도 춘천시 남춘천역 구내
부산지방 철도특별 사법경찰 대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역 구내
	동대구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역 구내
	신경주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신경주역 구내
	구포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역 구내
	구미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역 구내
광주지방 철도특별 사법경찰 대	익산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역 구내
	광주송정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송정역 구내
	목포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역 구내
	순천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역 구내
제천지방 철도특별 사법경찰 대	제천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역 구내
	영주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역 구내
	서원주센터	강원도 원주시 서원주역 구내
	강릉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역 구내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② (생략)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담당관·재정담당관·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국제협력통상담당관· <u>정보화통계담당관</u> 및 <u>정보보호담당관</u>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u>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③ ----- ----- ----- ----- ----- <u>정보화통계담당관</u> · <u>정보보호담당관</u> 및 <u>기업성장지원팀장</u> ----- ----- <u>기술서기관</u> 으로, <u>기업성장지원팀장</u> 은 서기관· <u>기술서기관</u> · <u>행정사무관</u> 또는 <u>시설사무관</u> ----- -----.
④ ~ ⑫ (생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신설>	⑭ <u>기업성장지원팀장</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u>기획조정실장</u> 을 보좌한다.
	1. <u>국토교통 부문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력·기술·인프라 교류협력 등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u>
	2. <u>국토교통과학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창업지</u>

	<u>원에 관한 사항</u>
	3. <u>국토교통부문 우수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u>
	4. <u>국토교통부문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u>
	5. <u>국토교통 혁신펀드 운영에 관한 사항</u>
	6. <u>산하기관의 국토교통과학기술 활용촉진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육성 관련 총괄조정</u> 에 관한 사항
⑬ (생략)	⑭ (현행 제13항과 같음)
제5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5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u>국제협력통상담당관</u> , <u>도시활력지원과장</u> , <u>모빌리티정책과장</u> , <u>공항안전환경과장</u> , <u>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u> , <u>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u> , <u>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u> 및 <u>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u>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 ----- ----- <u>건축문화경관과장</u> , <u>모빌리티정책과장</u> ----- ----- ----- <u>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u> , <u>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u> , <u>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u> 및 <u>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장</u> -----.

신·구정원대비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25</u>	<u>26</u>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60</u>	<u>59</u>	-1
.	.	.	
.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25</u>	<u>26</u>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61</u>	<u>60</u>	-1
.	.	.	
.	.	.	